

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5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1999. 6. 29

제 출 자 : 사 하 구 청 장

1. 제 안 이 유

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방세감면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

2. 주 요 골 자

사하구내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·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함에 있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 및 제5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 및 재산취득일부터 7년간 전액을 면제(공제)하고 그 다음 3년간 50%를 경감(공제)한다.

3. 관 계 법 령

지방세법 제9조

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

제27조의4(부산광역시사하구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) 사하구내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·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제1호·제2호 및 동조 제5항제2호·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함에 있어서는 동법 제121조의2 제4항 단서 및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정한 기준일부터 7년간 전액을 면제(공제)하고 그 다음 3년간 50%를 경감(공제)한다. 다만,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9의 규정에 의한 추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정한다.

1.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 제4항에 의한 감면은 사업개시일
2.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2 제5항에 의한 감면은 재산을 취득한 날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신 설></p>	<p>제27조의4 (부산광역시사하구 외국인투자지 원을위한 감면) 사하구내에서 외국인투자 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·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 조세특례 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제1호·제2호 및 동조 제5항 제2호·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 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함에 있어서는 동법 제121조의2 제4항 단서 및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정한 기준일부터 7년간 전액을 면제(공제)하 고, 그 다음 3년간 50%를 경감(공제)한 다. 다만,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 의9의 규정에 의한 추정대상이 되는 경 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정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에 의한 감면은 사업개시일 2.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5항에 의한 감면은 재산을 취득한 날